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5. 1. 1. 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자금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자금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저소득주민장학계정 자금 업무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개정(안 제27조의6)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동이 발생하여도 규칙개정이 필요 없도록 부위원장 임면을 개선하여 입법경제성을 높이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1) 「서울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12.26. 시행) : 생활보장과 신설(교육문화복지국)

나. 합 의 : 해당없음

다.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항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규정 및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 생략

3)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4) 부패/인권/성별/아동 영향평가 : 해당없음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6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저소득주민장학계정 자금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6(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자금 심사위원회) ① (생략)	제27조의6(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자금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기획경제국장</u> , 위원은 구의원 1명과 민간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저소득주민장학계정 자금 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② ----- ----- <u>저소득주민장학계정 자금 업무 소관부서의 국장이 되며</u>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직개편(부서신설)에 따른 저소득주민장학계정 자금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면사항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조직개편(부서신설)에 따른 저소득주민장학계정 자금 심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면사항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일환